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51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권인숙・유정주・정춘숙

윤미향・이수진비・이수진

남인순 · 최혜영 · 장혜영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 등이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곧 출소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재범방지를 하기에 미비한 상태임.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 외에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이수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부착자의 재범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조치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반드시 부과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3항,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

까지).

법률 제 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제1항제3호를"을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로 한다. 제14조의2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도 법원은 피부착자가 다시 준수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피부착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 추가의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부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재범의 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가 필요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할 수 있다.
- ⑥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

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 ②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준수사항) ①・② (생	제9조의2(준수사항)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③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	
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u>제1</u>	<u>제1</u>
<u>항제3호를</u> 포함하여 준수사항	<u>항제3호 및 제4호를</u>
을 부과하여야 한다.	<u></u>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
	한 경우에도 법원은 피부착자
	가 다시 준수사항을 이행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500시간
	의 범위에서 제9조의2제1항제4
	호의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
	<u>다.</u>
<u> <신 설></u>	④ 법원은 피부착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 추가의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

<신 설>

<신 설>

는 피부착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재 범의 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 가 필요성에 관한 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부착자 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 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 고를 요구할 수 있다.